# 플랫폼산업발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선

2016. 11. 11.

테크앤로 대표 구태언 taeeon.koo@teknlaw.com



## 디지털 마켓과 플랫폼

## 재화와 서비스가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을 통해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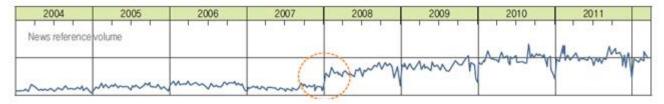
- □ 전통시장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온 라인서비스와 디지털 기술로 연결해주는 시장
- □ 온라인에 특화된 서비스의 공급도 포함하나, 디지털 기술의 중개를 통해 오프라인의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시장
- □ 디지털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가 만나 는 플랫폼의 장악
- □ 글로벌 기업들은 검색 서비스,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메신저 서비스, VR 서비스, 인공지능 서비스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를 모이게 하 고 그들로부터 데이터를 입수하여 소비자의 행태를 예측하고 맞춤형 서 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장악
- □ 전통시장을 지지하는 법률제도와 정부를 갖고 있는 우리 혁신기업들은 디지털 시장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현행법위반 또는 정부의 금지속에 경쟁력을 잃고 있음

## 플랫폼산업간 글로벌 경쟁

### 글로벌 기업들은 플랫폼을 지배하기 위해 무한 경쟁을 펼치고 있음

□ 플랫폼에 대한 관심을 2007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구글 트렌즈 (Google Trends)에서 'platform' 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언론에 기사화된 빈도가 2007년 후반부터 급증했음을 알 수 있음

#### [그림1] 구글 트렌즈에서 'platform'을 검색한 결과



- □ 인터넷 혁명을 주도하는 4인방(Gang of Four)의 변화
- □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시스코, 델 ->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 □ 에릭 슈미트(전 Google CEO)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이들이 IT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플랫폼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 EU – Digital Single Market 정책

### 미국경제와 경제전쟁을 벌이는 EU의 고육지책

- 디지털 경제를 장악한 미국 기업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자국 기업과 경제의 디지털화가 급선무 – 플랫폼산업을 키우기 위함
- 개인정보보호 통일규제(GDPR)를 통해
  - 내부적으로는 원활한 경제교역을 달성하고,
  - 외부적으로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이 EU내에서 사업하기 곤란하게 방
- 자국 시장을 디지털 시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 규제(Regulation) 장벽의 철폐를 핵심사항으로 파악
  - 규제장벽은 모든 물품과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것을 방해
  - 규제는 전통산업의 기득권의 반영이지 미래세대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님
  - 전통산업은 법률을 무기로 혁신가(Innovator)들의 등장을 방해
  - 우리나라 상황도 다르지 않음

## 국가정보화 20년 - 통신망고도화에 집중 / 인터넷신산업은 2013년부터 등장

20년동안 IT부처는 통신망 회선속도를 빠르게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 – 회선사업자들을 위한 정보화 세계경제는 인터넷이 출현한 90년대말, 모바일시대로 넘어간 2007년부터 디지털 마켓에 집중

#### [ 국가정보화 패러다임 변화와 정보화 정책 추진경과 ]

정보화 패러다임		1975 20년 전의 정보화 PC 시대		1994 20년 동안의 정보화			2013 중반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정보화	
				인터넷 시대			모바일 시대	초연결 시대
		디지털화, 전산화		온라인화, 정보화			모바일화, 소설화	개인화, 지능화
정보화이슈		데이터베이스, PC통신, GPS, 초고속 인터넷 망		전자정부, 온라인		스마트폰, 모바일 인터넷, 포털, SNS		융합, 클라우드, 빅데이터, loT, 웨어러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추진	목 적	행정전산화 추진	국가기간전산망 보급 · 확장	국가사회 정보화 촉진		지식정보사회 구현		초연결사회의 창조경제 구현
	근거	박정희 대통령 행정전산화 추진지시(1975)	전산망보급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		국가정보화기본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정책	〈1978년 수립〉 1차 행정전산화 기본계획	〈1988년 수립〉 1차 국가기간 전산망 기본계획		〈1999년수립〉 2차 Cyber Korea21 (1999~2002)	(2002년수립) 3차 e-Korea (2002~2006)		
		(1978~1987)	(1987~1991)	(1996년 수립) 1차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1996~2000)		(2003년 수립) 3차 개정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 (2003~2007)		〈2013년 수립〉 - 5차 국가정보화기본계획 (2013~2017)
		(1982년 수립) 2차 행정전산화 기본계획 (1978~1986)	(1992년 수립) 2차 국가기간 전산망 기본계획 (1992~1996)				(2012년 수립) 4차 수정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2008~2012)	
						(2006년 수립) 3차 연동 u-Korea 기본계획(2006~2010)		
						〈2002년 수립〉 초고속정보통신망	〈2009년 수립〉 Giga인터넷	〈2013년 수립〉 콘텐츠산업 진흥계획
정보화 사업·산업활성화 정책 추진			1차 국가기간 전산망 사업 (1987~1991)	(1995년 수립)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 종합추진계획	(2001년수립) 전자정부사업	고도화 사업추진	〈2009년 수립〉 사물지능통신	〈2013년 수립〉 SW 혁신전략
						〈2004년 수립〉 IT839	〈2009년 수립〉 클라우드 활성화	(2013년 수립) ICT R&D 중장기 전략
		_				(2004년 수립) USN 구축	〈2011년 수립〉 빅데이터 활용 스마트정부 구현	〈2013년 수립〉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
			2차 국가기간 전산망 사업 (1992~1996)	〈1997년 수립〉 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계획	〈2001년 수립〉 초고속정보통신망 고도화 기본계획		(2010년, 2012년 수립) IT융합 확산전략	(2013년 수립) 빅데이터 산업 발전전략
						〈2004년 수립〉 1차 BCN 시범사업	〈2012년 수립〉 빅데이터 서비스 활성화 방안	〈2014년 수립〉 클라우드 산업육성
						〈2006년 수립〉 2차 BCN 시범사업	〈2012년수립〉 빅데이터 마스터플랜	〈2014년 수립〉 사물인터넷 기본계획
							(2013년 수립) 인터넷 신산업 육성 방안	〈2014년 수립〉 ICT 융합활성화 기본계획

##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의해 좌초된 빅데이터 산업발전 전략

개인정보보호법제가 이미 확고한 상황에서 빅데이터 산업 발전 전략 수립, 추진 2016년 현재 전혀 산업형성 안됨 - 뒤늦게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2016. 7. 1.) 발표..역부족



## **빅데이터 산업 발전전략(2013~2017)**

- ◆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정부 구현방안('11.11, 전략위):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재난·환경 문제 등에 사전 대응 방안 마련
- ◆ 빅데이터 서비스 활성화 방안('12.6, 방통위): 세계 최고수준의 IT 인프라와 이를 통해 생성되는 데이터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공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차원의 정책 마련
- ◆ 빅데이터 마스터플랜('12.11, 교과부 등): 데이터 분석기반 정책수립, 사회현안 해결, 데이터 기반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 제공, 신성장 동력 창출 등 스마트 강국실현 정책
- ◆ 빅데이터 시범서비스 개발('13.6, 미래부): 심야버스 노선, 질병주의 예보 등 공공과 민간이 보유한 데이터를 연계하여 수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
- ◆ 빅데이터 분석 · 활용 센터 개소('13.10, 미래부) : 대용량의 데이터 분석 인프라를 보유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에게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Shared Service 및 실습환경을 제공

### 빅데이터 산업 추진전략의 실패의 교훈

- ➡ 디지털 마켓 이행에 관한 '국가적 전략 어젠다' 설정 없는 산업추진전략의 문제점
  - "빅데이터 활용 = 개인정보 오남용 = 불법"이라는 규제에 대한 몰이해
  - 융합되지 않은 단편적 정부 규제의 대표적 사례
    - 서비스 산업경제의 원유라고 일컫는 개인정보의 이용가치에 대한 숙고 없이 오로지 정보인권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에만 집중. 국회는 계속 강화 입법

#### [ 비전 및 중점 추진과제 ]

#### 빅데이터 활용강국 도약

빅데이터 기반 창조경제 · 정부3.0 및 국민행복 실현

#### 목표

시장창출지원 2배 이상 핵심기술개발 7개 분야 고급인력양성 5천명 이상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10개 기업

#### 수요: 시장창출 및 확대

- 시범사업으로 Best Practice 조기 확사
- 주요 산업별 선도 활용 프로젝트 추진
- 활용 인프라 제공 및 사회적 붐 조성



#### 공급: 산업 육성기반 확대

- 핵심 원천기술 조기 확보 및 국제 표준화 주도
-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 거버넌스 정비

#### 인프라: 지속발전가능 생태계 조성

- 사용자 친화적 데이터 개방 확대 및 유통 촉진
- 전문 중소 ·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글로벌화

## 미국기업을 압도하고 있는 중국기업



## 플랫폼산업의 강자들 - 전세계 개인정보의 블랙홀



- □ 인터넷을 통해서 60초간 발생되는 것
  - 페이스북 : 분당 350GB의 데이터
  - **유튜브**: 72시간 분량의 동영상
  - 텀블러: 20,000개의 새로운 사진
  - **아마존 :** \$83,000 (약 1억원) 매출 과 거래기록
- □ (UP)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빅 데이터 활용을 통해 소비자의 미래를 장악하는 글로벌 기업들
- □ (DOWN) 고객에게 마케팅도 동의 없 이 할 수 없고, 서비스종료시 파기해 야 하는 한국기업들

## DT(Data Technology) - 개인정보활용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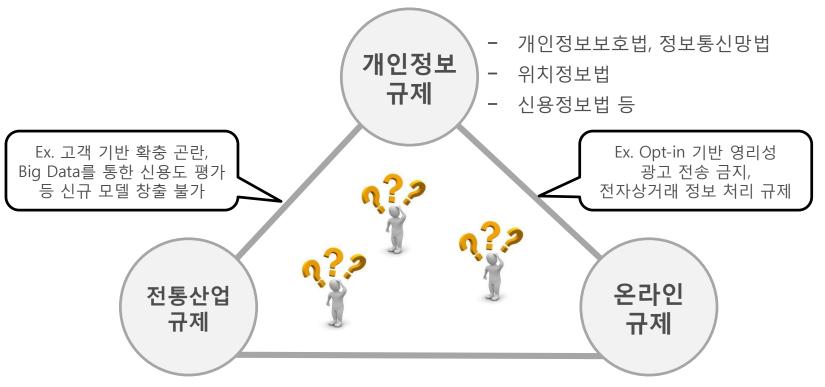


## 2015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기조연설 中:

"이제 20년간 지속되어온 IT 시대가 저물고, 앞으로 30년간은 DT(Data Technology) 혁명에 기반한 새로운 인터넷 시장이 열릴 것입니다. 이제는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 개별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줄 아는 기업이 성공하는 'DT시대' 입니다."

## 법뮤다 삼각지대 – 미래 혁신이 실종되는 규제의 블랙홀

## 플랫폼산업에 3중 규제로 총량초과 상태 - 정부에 규제총량 통제기능 부재



#### (금융산업의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 금융기관검사제재시행세칙
-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대부업법,
-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법 등

- 정보통신망법
- 전자상거래법
- 통신비밀보호법 등

## 개별적 사전동의 단점 - Privacy Divide(개인정보보호격차)

● 사업자는 동의 획득에 집중, 개인은 무의식적으로 동의, 정부는 개입 곤란….

### 개인도 LOSE

- -남발되는 고지와 무의식적 동의의 일상화... 개인정보통제권이란?
- -사전 동의제도의 반작용으로 사후 통제권 확보 어려움
- -정보역량격차에 따른 '프라이버시 양극화(Privacy Divide)'

### 기업도 LOSE

- -사물인터넷, 핀테크 산업 발전에 걸림돌
- -선진국에 비해 재미 없고 불편한 서비스 구현으로 연결
- -온라인 프라이버시가 강화된 2000년대 이후 인터넷 대기업 없고, SNS 쇠퇴

### 정부도 LOSE

- -개인이 동의하면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실질적 점검에 소홀
- -업무에 비해 인력/예산이 과소하고, 사후적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제도가 있으 나, 시정명령 등 예방적 시정활동 미흡

## 개별적 옵트인 제도 개선

## ● 개인정보 복지국가로 변환

### 개인정보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패러다임을 바꿔야

- -비식별정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를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때'부터 개인정 보로 보아 달라.
- -개별적, 구체적, 사전적 동의가 아니더라도 개인정보보호를 해 달라
- -사소한 잘못이나 미처 생각하지 못한 잘못은 형사처벌보다는 시정명령을 해달라.
- -정부가 개인정보보호표준을 제시하고,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심사하여 무효화 및 시 정권고를 우선하는 정책으로 전환해 달라.

#### 개선방향

- -개인정보 정의 개선 동일 개인정보처리자 기준 입수가능성 도입
- -사전동의형(Opt-In)에서 사후통제형(Opt-Out)으로
- -개인해결형에서 시정명령형으로

## 정보통신망법 제4장(개인정보보호) 개선안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 (2) 불합리한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다른 정보를 활용하여 정의 중복규제 (5) 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법만 적용 비식별화 (22③) 개인정보를 개인이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경우, 본 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제외 생성 (22의2) 특정개인을 식별할 의도로 동의 없이 개인정보 아닌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생성 금지 동의간주 (22, 25①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 사항 공개하고 고지시 동의 간주 31①, 63②) 동의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이용 중지 요구 가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편리하게 이용 중지 요구할 수 있도록 조치 일괄동의 (24의2③) '수집동의'와 '제3자 제공 또는 위탁동의' 구분 의무 삭제로 일괄 동의 가능 경제적 기술적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동의 없이 목적 외 이용 목적 외 이용 (22(2))개인정보 취급방침에 그 목적을 공개한 경우 동의 없이 목적 외 이용 가능 (27의2①4)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전 취급방침 및 그 변경사항 고지 의무 신설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취급방침 조사의무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 호의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 +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고시 보호조치 (28①,령1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각 호,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고시 모두 폐지 동의 위반한 수집·이용·제공·위탁에 관한 형사처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형사처벌 벌칙 동의 위반한 수집·이용·제공·위탁에 관한 형사처벌 폐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형사처벌 폐지 (73 9호) 시정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자 형사처벌 신설